

第260回國會
(臨時會)

法制司法委員會會議錄

第 5 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6年6月29日(木)

場 所 法制司法委員會會議室

【제안설명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6. 6. 29

제안자 : 김정훈 의원

존경하는 안상수 법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부산 남구갑 출신 김정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위원님들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설명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현행법은 수능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해선 구분 없이 1년간 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수능시험의 수험생 대다수가 미성년자이고 수능시험이 대학 입학전형자료의 일부인 점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을 일괄해서 처벌하는 것은 너무 가혹한 처사임을 감안하여 고등교육법 가운데 일부 내용을 개정하여 법사위 소속 위원님들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안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의 부정행위 가운데 경미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제재조치를 완화하여 적용토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금지된 물품의 소지 또는 반입, 감독관 지시사항의 불이행 등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자의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아니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수능시험 부정행위자의 인성교육을 현행 40시간에서 20시간으로 20시간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현행법은 지난 2005년도 수능에서 휴대폰을 이용한 대규모 부정사례가 일어나자 행정 편의주의

적으로 수능시험 응시제한을 당해 시험은 물론 1년간으로 연장하고 40시간의 인성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난해 휴대전화기, MP3 등 반품금지물품을 단순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응시기회를 박탈당한 경미한 부정행위를 한 응시생들이 올해 2007년 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구제됩니다.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법사위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교육위원회에서 일부 수정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를 통해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輕犯罪處罰法 일부개정법률안

자전거이용活性化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연월일 : 2006. 6. 29

제안자 : 강창일 의원

존경하는 안상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제주시 북제주군갑 출신 열린우리당 강창일 의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이하 '제주특별법')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조직·사무·인사 관련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경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사법경찰관리의직무

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 이상 6개 부수 법률의 개정이 필요합니다.

이 중 5개의 법률에 대한 개정안이 발의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 통과되어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안은 정부 입법으로 6월 14일 법사위에 제출되었습니다.

당장 7월 1일부로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제주 자치경찰단이 발족됩니다. 제주자치경찰이 명실상부한 생활자치 경찰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수 법률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이하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자치경찰단을 설치하는 내용을 기본 전제로 하는 5개 부수법률 개정안들에 대해서 차례대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이 설치됨에 따라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치경찰에 대한 지원·협조에 관한 정책사항을 추가하고, 비상사태 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정비·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자치경찰에 관한 지원·협조에 관한 정책사항을 추가(안 제9조제1항제4호 신설)

나. 비상사태 시 자치경찰에 대한 지휘·명령의 근거 마련(안 제25조 신설)

2.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의 인사교류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의 산정에 있어서는 자치경찰공무원으로 해당 계급에 근무한 연수를 삽입하는 등 자치경찰제와 관련된 일부 규정을 정비·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의 활성화(안 제8조제3항제8호, 제9조제6항, 제10조제4항제4호 및 제10조의2 신설)

나.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특별채용된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정년산정(안 제24조제2항 신설)

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지역교통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교통법규위반 단속 등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의 권한을 규정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칙자 단속 시의 통보 조치(안 제138조제3항 및 제163조제2항 신설)

나. 과태료 부과·징수(안 제161조제1항 내지 제3항)

다. 범칙금의 납부(안 제162조 및 제164조)

라. 통고처분(안 제163조)

4. 경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으로 자치경찰이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단속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기초질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제주자치도지사에게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칙금의 납부(안 제5조 및 제7조)

나. 통고처분(안 제6조)

5.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7849호, 2006. 2. 21 공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이 지역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자전거 이용 도로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범칙행위자에 대한 범칙금 납부를 통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범칙금의 납부(안 제26조 및 제28조)

나. 통고처분(안 제27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개정법률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